

의안번호	2204493
의 퇴 인	주철현의원
회 답 일	2024. 11. 12.
추 계 번호	24B4010

해양의 효율적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률안

【비용추계서】

I. 비용추계 결과

- (일부추계) 제정안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해양관할구역설정심의위원회
회를 설치·운영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설정에 필요한 조
사·측량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 9억 9,600만원, 2030년 11억 5,400만원 등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총 53억 6,800만원(연평균 10억 7,400만원) 이상으
로 추계됨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
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
할 것임

[표 1] 제정안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단위: 백만원)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연평균
해양관할구역확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9조)	10	10	10	10	10	48	10
전문기관의 지정 등(안 제14조), 조사 및 측량 등(안 제17조)	987	1,024	1,062	1,103	1,145	5,320	1,064
추가재정소요	996	1,034	1,072	1,112	1,154	5,368	1,074

주: 1. 단수 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2. 매년 해역 2개소에 대한 조사 및 측량 업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추계기간 이후에도 추
가재정소요가 발생함

3.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
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II. 재정수반요인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1	안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관할구역획정심의위원회</u> (이하 “위원회”라 함)를 둔(제1항)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함.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함(제2항)	의무규정
2	안 제13조(해양관할구역획정추진단 등)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 업무를 전문적·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위원회의 심의·의결사항에 대한 보좌를 위하여 <u>해양수산부에 해양관할구역획정추진단</u> (이하 “추진단”이라 함)을 둔(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 업무의 지원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u>해양관할구역획정지원단</u> 을 둘 수 있음(제3항)	의무·재량 규정
3	안 제14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u>해양수산부장관</u> 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획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u>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음</u> (제1항) <u>해양수산부장관</u> 은 전문기관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u>비용</u> 을 예산의 범위에서 <u>지원할 수 있음</u> (제3항)	재량규정
4	안 제1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u>해양수산부장관</u> 은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u>5년마다 해양관할구역획정기본계획</u> (이하 “기본계획”이라 함)을 <u>수립하여야 함</u> (제1항)	의무규정
5	안 제16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u>해양수산부장관</u> 은 해양관할구역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획정하기 위하여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u>매년 해양관할구역획정추진계획</u> (이하 “추진계획”이라 함)을 <u>수립하여야 함</u> (제1항)	의무규정
6	안 제17조(조사 및 측량 등)	<u>해양수산부장관</u> 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을 획정하기 위하여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제1항에 따라 <u>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측량</u> ,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u>해양조사 및 해당 구역의 이용·관리 실태 조사 등 제6조에 따른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에 따라 조사</u> (이하 “조사등”이라 함)를 실시하여야 함(제1항)	의무규정
7	안 제19조(획정합의안의 제출 및 반영 등)	<u>해양수산부장관</u> 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u>획정합의안의 작성</u> 을 위하여 필요한 <u>행정적·기술적 지원</u> 을 할 수 있음(제4항)	재량규정

연번	조·항(조제목)	주요내용	비고
8	안 제23조(토지 등에의 출입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7조의 조사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공무원(제14조제1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전문기관의 임직원을 포함함)으로 하여금 타인의 토지나 어장(漁場), 양식장을 포함한 공유수면(이하 “토지등”이라 함)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게 할 수 있음(제1항) 1. 토지등에 출입 2. 토지등에 있는 나무, 흙, 시설물, 그 밖의 장애물의 이전·변경 3. 토지등의 조사등에 필요한 장비 등 적치 4. 토지등을 임시도로로 사용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 각 호에 따른 행위로 손실을 받은 자가 있으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상하여야 함(제4항)	재량·의무 규정

Ⅲ. 비용추계의 전제와 상세내역

1. 재정수반요인별 추계 여부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1	안 제9조(위원회 의 설치 및 구성)	○	• 민간위원 회의참석 사례금
2	안 제13조(해양관 할구역획정추진단 등)	×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해양수산부에 두는 해양관할구역획정추진단의 규모,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해양관할구역획정지원단의 규모 및 설치 여부 등을 구체화할 수 없어 합리적인 비용 추계에 한계가 있음
3	안 제14조(전문기 관의 지정 등)	○	•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참고 -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의 현황, 지방자치단체의 해양의 이용·관리 실태에 관한 조사·측량, 해양조사 등을 안 제 14조에 따라 지정된 전문기관이 수행하는 것으로 가정
6	안 제17조(조사 및 측량 등)		

연번	조·항(조제목)	추계여부	비고(추계 미 실시 사유)															
4	안 제15조(기본계획의 수립 등)	—	• 미대상 － 해양수산에 따르면 기본계획 및 추진계획은 현행 ‘해양경계 획정관리’ 사업을 통해 수행중으로 추가재정소요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됨 ·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본계획(안) 마련 259백만원 · 해양관할구역 획정 추진계획(안) 마련 162백만원 ※ [참고자료 3] 해양관할구역 획정을 위한 사전 연구 사업 세부 내역 참고 <해양경계 획정관리 예산(안): 2023~2025년(안)> (단위: 백만원) <table><tr><th>사업명</th><th>주요내용</th><th>2023</th><th>2024</th><th>2025(안)</th></tr><tr><td colspan="2">해양공간 통합관리 (1031-305)</td><td>2,387</td><td>4,819</td><td>4,443</td></tr><tr><td>－ 해양경계 획정관리</td><td>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지자체간 분쟁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저감을 위한 지자체의 해양 관할구역 획정·관리 추진</td><td>—</td><td>1,300</td><td>950</td></tr></table>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사업명	주요내용	2023	2024	2025(안)	해양공간 통합관리 (1031-305)		2,387	4,819	4,443	－ 해양경계 획정관리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지자체간 분쟁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저감을 위한 지자체의 해양 관할구역 획정·관리 추진	—	1,300	950
사업명	주요내용		2023	2024	2025(안)													
해양공간 통합관리 (1031-305)		2,387	4,819	4,443														
－ 해양경계 획정관리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지자체간 분쟁 예방 및 사회적 비용 저감을 위한 지자체의 해양 관할구역 획정·관리 추진	—	1,300	950														
5	안 제16조(추진계획의 수립 등)																	
7	안 제19조(획정합의안의 제출 및 반영 등)	—	• 미대상 － 관계 지방자치단체에 획정합의안의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기술적 지원은 안 제14조 및 제17조에 따른 측량 및 조사결과 제공으로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8	안 제23조(토지등의 출입 등)	×	• 제3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 현시점에서는 토지등의 출입 등으로 인한 손실 발생 여부 및 그 보상 규모를 예측하기 곤란하여 합리적인 비용추계에 한계가 있음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2. 비용추계의 총괄적 전제

□ 명목임금상승률은 국회예산정책처 전망치 적용¹⁾

1)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 제정안 부칙은 법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추계기간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으로 함

3. 재정수반요인별 상세 추계내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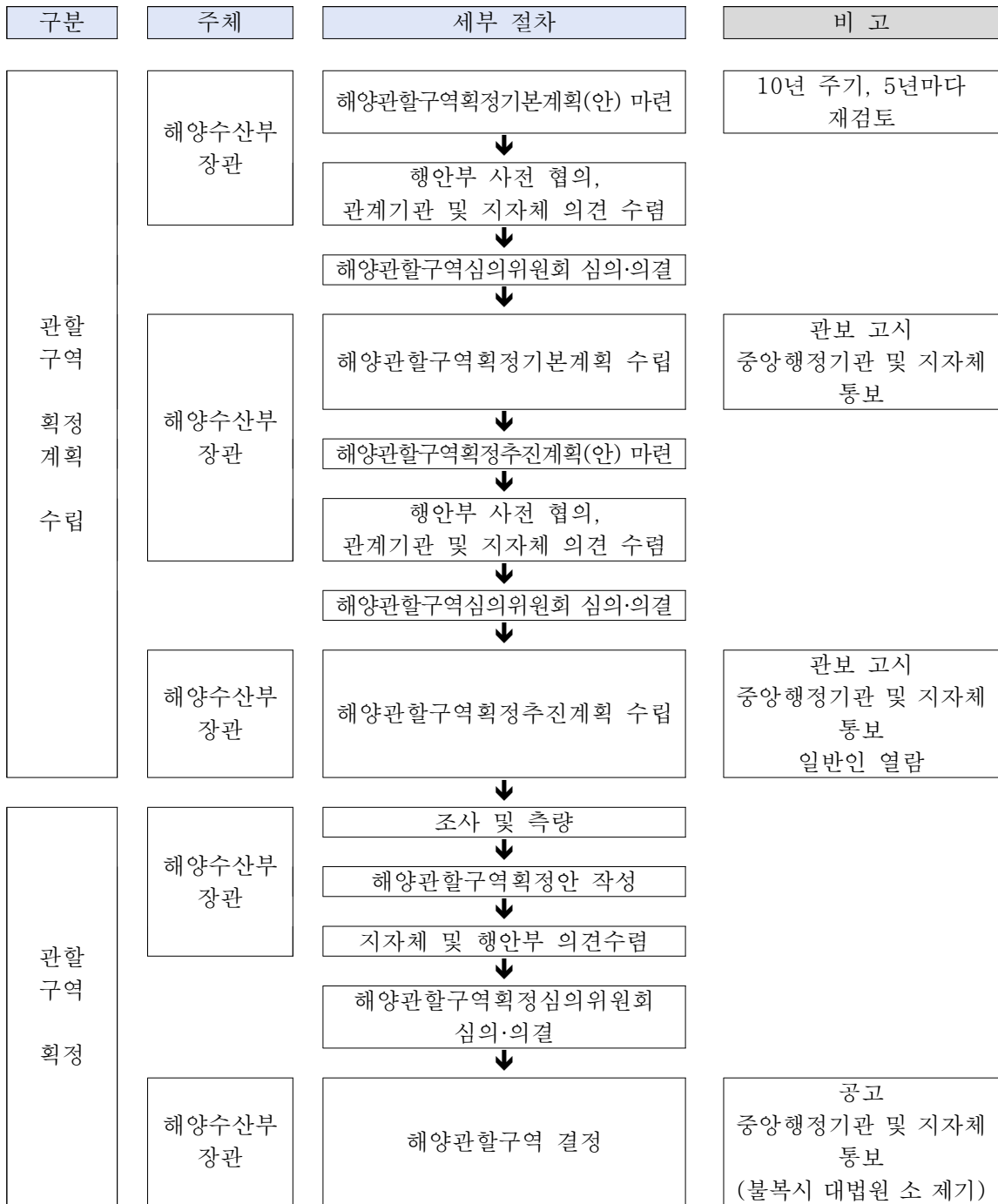
가. 지방자치단체의 해양관할구역 확정 개요

-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범위에는 육상과 더불어 해상도 포함되나, 현행 법 체계에 해상경계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이 부재한 상황
 - 해상풍력, 골재채취 등 해상경계를 둘러싼 지자체 간 분쟁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향후 해양 이용·개발의 다변화로 갈등 심화 예상
 - － 해양 관할구역을 둘러싼 지방자치단체의 분쟁은 총 29건으로 조사
 - ※ [참고자료 1] 지방자치단체 해양 관할구역 분쟁 현황,
[참고자료 2] 전국 연안 지방자치단체 현황(11개 시·도, 73개 시·군·구) 참고
- 해양수산부는 지방자치단체 및 주민의 행정적·경제적 이익 침해 최소화를 위한 객관적이고 형평성 있는 확정기준 마련을 위한 사전 연구 중
 - 사전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형평의 원칙에 입각한 확정 절차 마련 추진
- 해양경계 확정관리 사업
 - 시·도별 해양 관할구역 확정·관리를 위한 문헌·해양조사, 확정안 마련 및 해양관할구역확정심의회 운영
 - － 육상과 해양공간의 연속성을 고려하여 확정대상 해역 기초자료* 조사 및 공간정보 구축
 - * 육상과 연속적인 해저지형·지물, 해저케이블, 배관 등 지리상 자연적 조건, 행정적·경제적 이익 등 관련된 자료 등
 - － 도서 중심으로 경계 시작점, 해안선·행정경계·지적공부간의 불부합, 등거리·중간선 기점, 지적공부 미등록 등 쟁점 대상에 대한 정밀한 현장 조사 수행
 - * 산출내역: 확정 대상해역 기초자료 조사 및 공간정보 구축 950백만원('25년(안))

(2024.10. 기준, 단위: %)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명목임금상승률	3.2	3.6	3.9	3.8	3.8	3.8	3.8

[그림 1] 지방자치단체 간 해양관할구역 획정 업무 체계도



나. 해양관할구역획정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안 제9조)

- 제정안은 해양수산부장관 소속으로 해양관할구역획정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고,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회의참석 사례금 등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구성)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

- 이에 따라 민간위원 수는 8명으로, 회의는 연간 4회 개최하며, 회의참석 사례금(안전 검토비 등 포함)은 1회 회의 개최 시 1인당 3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가정²⁾

- 추계 결과, 해양관할구역설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4,800만원으로 추계됨

[표 2] 해양관할구역설정심의위원회 설치·운영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민간위원 수(A, 명)	8	8	8	8	8	—
회의개최 횟수(B, 회)	4	4	4	4	4	—
사례금 단가 (C, 만원/명·회)	30	30	30	30	30	—
추가재정소요 (D=A×B×C, 백만원)	10	10	10	10	10	48

주: 단수 조정으로 합계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다. 전문기관의 지정 등(안 제14조), 조사 및 측량 등(안 제17조)

- 본 추계에서는 토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측량, 해양조사 및 실태조사 등(안 제14조)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하는 전문기관이 수행하고,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가정(안 제14조)

-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2024년 현재 해양관할구역 획정을 위한 사전 연구를 통해 획정기준 마련, 해양공간 이용실태, 육해상 지형연계를 위한 기존 측량자료 분석 및 지적불부합 등 시범 조사·측량 등을 수행중

※ [참고자료 3] 해양관할구역 획정을 위한 사전 연구 사업 세부 내역 참고

2) 법령 등에 의해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민간위원에 대한 회의참석 사례비 및 안전 검토비는 일반수용비에 편성하며, 위원회 참석비는 1일당 150,000원내, 회의시간이 2시간 이상일 경우 추가 1회 50,000원내로 편성(기획재정부, 「2025년도 예산안 편성 및 기금운용계획안 작성 세부지침」, 2024. 5., 218쪽)

- 이후 대상해역의 해양관할구역 확정안을 작성하기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DB 구축에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 기초자료 조사 및 DB 구축을 위한 조사대상 및 단가는 해양수산부 제출 자료 참고
 - 매년 해역 2개소에 대한 조사 및 측량 업무 실시(총 11개 연안 광역지자체 해역)
 - 1개 해역 조사단가 475백만원³⁾
- ※ 이때, 조사단가에 국회예산정책처 전망 명목임금상승률 적용

[표 3] 해양관할구역 획정을 위한 기초자료 조사 및 DB 구축

조사대상	• 매년 2개소 해역 조사 (총 11개 연안 광역지방자치단체 해역) - 해양관할구역 확정안 마련을 위한 획정기준에 따른 관할구역 확정 대상해역의 이용·관리 실태 조사
조사항목	• 해양관할구역 획정기준에 따른 해당 구역의 지적공부상 토지 현황조사(지적조사 등), 해양공간에 대한 이용 현황(공유수면 점·사용 등), 수로측량, 기 구축 자료를 활용한 육해상 해저지형 연계분석 등
조사단가	• 해역 1개소당 475백만원 - 조사측량 375백만원/개소 - 시범해역 획정 시뮬레이션 100백만원/개소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 추계결과,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자치단체의 해양 관할구역 설정을 위한 조사·측량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기관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경우, 추가재정소요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총 53억 2,000만원으로 추계됨

[표 4] 해양 관할구역 조사·측량 및 전문기관 지원에 따른 추가재정소요: 2026~2030년

	2026	2027	2028	2029	2030	합계
조사대상 해역 수 (A, 개소)	2	2	2	2	2	—
해역당 조사단가 (B, 백만원/개소)	493	512	531	551	572	—
추가재정소요 (C=A×B, 백만원)	987	1,024	1,062	1,103	1,145	5,320

주: 매년 해역 2개소에 대한 조사 및 측량 업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추계기간 이후에도 추가재정소요가 발생함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국회예산정책처 작성

3) 해양수산부는 2025년도 예산안에 2개 해역에 대한 현황 조사 및 획정 예산으로 950백만원을 편성함
- 조사·측량 750백만원(2개소), 시범해역 획정 시뮬레이션 200백만원(2개소)

IV. 부대의견

- 제정안의 다른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는 추계가 곤란하여 일부 재정수반요인에 대해서만 추계한 것으로 전체적인 재정소요액은 추계된 금액을 상회할 것임

V. 작성자

□ 성명

국회예산정책처	분석관	과장
경제비용추계과	이주호	배아형

□ 대표연락처

성명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
이주호	02-6788-3746	progress@nabo.go.kr

[참고자료 1] 지방자치단체 해양 관할구역 분쟁 현황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구분	시·도	발생연 도	분쟁기간	분쟁대상	비고
매립지 (9건)	경남 사천시 / 고성군	1984	35년	발전소 매립지	헌법재판소 결정
	인천 남동구 / 경기 시흥시	1996	2년	신도시 매립지	중앙분쟁조정위원회 결정
	전남 광양시 / 전남 순천시	1997	9년	산단 매립지	헌법재판소 결정
	경기 평택시 / 충남 당진군	1999	22년	항만 매립지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부산 강서구 / 경남 진해시	2001	9년	항만 매립지	헌법재판소 결정
	인천 연수구 / 남구	2003	8년	신도시 매립지	헌법재판소 결정
	인천 연수구 / 중구	2003	8년	신도시 매립지	헌법재판소 결정
	인천 연수구 / 남동구	2003	17년	신도시 매립지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전북 군산시 / 부안군/ 김제시	2013	7년	새만금 매립지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공유수면 (20건)	전남 강진군 / 완도군	1962	—	면허어업	합의
	전북 군산시 / 충남 보령시	1981	21년	조업	대법원 판결
	전북 군산시 / 충남 서천군	1981	17년(계속)	조업	대법원 판결
	충남 당진군 / 경기 화성시 / 인천 옹진군	1981	계속	조업	미해결
	경북 울진군 / 강원 삼척시		—	조업	합의
	경남 통영시 / 부산 강서구	1989	—	조업	합의
	경남 거제시 / 고성군	1991	—	조업	합의
	전남 장흥군 / 완도군	1992	—	조업	합의
	전남 진도군 / 해남군	1994	30년	면허어업	대법원 판결, 합의
	제주 북제주(제주시) / 전남 완도군	1996	계속	조업	미해결
	경북 경주시 / 울산 북구	1997	—	조업	합의
	부산 기장군 / 해운대구	1997	계속	조업	미해결
	경남 사천시 / 경남 하동군	1999	—	조업	합의
	전남 보성군 / 고흥군	2001	—	면허어업	합의
	충남 홍성군 / 태안군	2001	14년	면허어업(조업)	헌법재판소 결정
	경남 남해군 / 전남 여수시	2005	16년	조업	대법원 판결 및 헌법재판소 결정
	전북 고창군 / 부안군	2016	3년	해상풍력	헌법재판소 결정
	경남 남해군 / 통영시	2022	3년	해상풍력	헌법재판소 결정
	제주 제주시 / 전남 완도군	2023	계속	해상풍력	권한쟁의심판 진행중
	인천 옹진군 / 충남 태안군	2005	4년	골재채취단지	헌법재판소 결정

[참고자료 2] 전국 연안 지방자치단체 현황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전국 연안 지방자치단체 현황(11개 광역시·도, 73개 지자체)]

(2024년 현재 73개)

구분	시·군·구	비고
인천 (7)	중구, 동구, 서구, 남동구, 연수구, 강화군, 옹진군	
경기 (5)	안산시, 평택시, 시흥시, 김포시, 화성시	
충남 (7)	서산시, 보령시, 아산시, 당진시, 태안군, 서천군, 홍성군	
전북 (4)	군산시, 김제시, 부안군, 고창군	
전남 (16)	목포시, 순천시, 광양시, 여수시, 영광군, 함평군, 무안군, 신안군, 영암군, 해남군, 진도군, 완도군, 강진군, 장흥군, 보성군, 고흥군	
경남 (7)	창원시, 거제시, 사천시, 통영시, 하동군, 남해군, 고성군	
부산 (10)	중구, 동구, 남구, 서구, 사하구, 해운대구, 수영구, 영도구, 강서구, 기장군	
울산 (4)	동구, 남구, 북구, 울주군	
강원 (6)	삼척시, 동해시, 강릉시, 속초시, 양양군, 고성군	
경북 (5)	포항시, 경주시, 영덕군, 울진군, 울릉군	
제주 (2)	제주시, 서귀포시	

자료: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참고자료 3] 해양관할구역 획정을 위한 사전 연구 사업 세부 내역

(해양수산부 제출자료)

1. 용역개요

- 용역명: 해양관할구역 획정을 위한 사전 연구
- 기간: '24.3.26 ~ '25.3.20(계약일부터 12개월)
- 계약금액/ 용역사: 1,229백만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컨소시엄

2. 세부내역 및 집행현황

세부과제명	산출금액 (백만원)	산출내역
○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본계획(안) 마련	259	- 인건비(5명/213백만원) - 직접경비(전문가활용비등/46백만원)
○ 해양관할구역 획정 추진계획(안) 마련	162	- 인건비(3명/131백만원) - 직접경비(전문가활용비등/31백만원)
○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준 및 업무처리 규정(안) 마련	132	- 인건비(2명/101백만원) - 직접경비(전문가활용비등/31백만원)
○ 시범해역 현황조사 및 해양관할구역 획정 기술 검토	676	- 인건비(15명/250백만원) - 직접경비(여비, 임차료등/113백만원) - 간접경비·기술료등(254백만원) - 기타·부가가치세(59백만원)
총계	1,229	

※ 2025년도 산출내역

세부과제명	산출금액 (백만원)	산출내역
○ 해양관할구역 획정 대상해역 조사 및 측량	950	- 기초자료 조사 및 공간정보 구축 1식 (일반연구비)
- 조사·측량	750	(2개소)
- 시범해역 획정 시뮬레이션	200	(2개소)

*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필요한 해역별 기초자료 수집 및 사전조사